

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(제24조제2항 관련)

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		참여자	이행조건	부담금 경감률(%)
1. 주차수요 관리	가. 주차장 유료화 시행	종사자 및 이용자	평일 9시간 이상 시행	10
			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	20
	나. 주차요금 부과 수준	종사자 및 이용자	주차요금 부과	5
			동일지역(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 하는 지역을 말한다. 이 하 이 표에서 같다)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	10
			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 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	20
	다. 주차면수 감축 비율	시설물 소유자	10퍼센트 미만인 경우	5
			10퍼센트 이상인 경우	10
	라.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	시설물 소유자	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	10
			50퍼센트 이상인 경우	20
	마. 주차정보제공 시스 템 구축·정보공유	시설물 소유자	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	20
			주차정보 제공	5
2. 대중교통 이용촉진	가.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	종사자	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	2
			월 4회 이상 운영	5
	나. 대중교통 이용 지 원	종사자	전체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	10
			전체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 급	20
	다. 환승역 간 셔틀버 스 운행	종사자 및 이용자	7시부터 20시까지 운행	10

3. 승용차 수요 관리	가. 10부제	종사자 및 이용자	100퍼센트 참여	10
	나.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또는 5부제			20
	다. 2부제			30
	라.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(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)	종사자 및 이용자	승용차 1대 운행	2 (다만, 전체 이용건수 30건당 0.2를 추가하되, 최고 2까지 추가한다)
			승용차 2대 이상 운행	3 (다만, 전체 이용건수 30건당 0.2를 추가하되, 최고 2까지 추가한다)
	마. 승용차 함께 타기	종사자	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	5
			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참여	10
			40퍼센트 이상 참여	15
	바. 업무택시제	종사자	출장 시 소속 기관 또는 업체가 계약한 업무용 택시 이용	최대 5 (소속 기관 또는 업체가 결제한 택시 운임·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)
4. 원격 근무 또는 재택 근무	상시	종사자	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	5
			20퍼센트 이상 참여	10
5. 시차 출근	오전 9시 기준, 1시간 이상 시차 출근	종사자	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참여	5
			80퍼센트 이상 참여	10
6. 자전거 이	상시	종사자	10퍼센트 이상 20퍼센	10

용			트 미만 참여	
			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참여	20
			30퍼센트 이상 참여	30
7. 통근버스 운행		종사자	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	10
			출근 및 퇴근 시 운영	20
8.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	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	시설물 소유자	매월 2일 이내 시행	5
			매월 3일 이상 시행	10
9. 경차 주차구획 운영	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	시설물 소유자	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경우	5
			10퍼센트 이상인 경우	10

비고

1.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,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$$\text{총 부담금 경감률}(\%) = [1 - (1-a) \times (1-b) \times (1-c)] \times 100$$

※ a, b,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

2.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중 ‘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’은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.

가. 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인 경우

$$\text{감축 비율} = [1 - (\text{해당 연도 주차면수} / \text{기준 연도 주차면수})] \times 100(\%)$$

나.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인 경우

$$\text{감축 비율} = [1 - (\text{해당 연도 주차면수} / \text{기준 주차면수})] \times 100(\%)$$

- ※ 1) "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"이란 시설물 건축 이후에 주차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 시설을 말하며, "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"이란 주차상한제 지역에서 신축되는 시설을 말한다.
- 2) "기준 연도 주차면수"란 2010년 1월 1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수를 말한다.
- 3) "기준 주차면수"란 「주차장법」 제19조제10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면수를 말한다.